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 12. 16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1995년 12월 7일

○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95. 12.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중등교육국장 전 태 식)

현행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의 규정에 준용하여 징수토록하여, 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을 일원화 시켜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검정고시에 관련된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징수

-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수수료징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증시하여 별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고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사료됨

5. 질 의 및 답 변

질 의 : 중학교 입학자격검정수수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답 변

-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규칙 제15조 2항에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와 교부수수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93. 4. 15일 본 규칙이 제정된 후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수수료징수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음

6. 토 론 요 지

각종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형평성 유지

7. 심 사 결 과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개정조례안 : 별첨

10.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